

< 참여정부 정책사 3 >

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

2008. 2.

공정거래위원회

< 목 차 >

I. 정책의제 설정 단계	1
1. 정책의제 설정의 계기·상황·환경	1
2. Actor and Leader	3
II. 정책결정단계	4
1.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	4
2.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찬반논의, 언론보도 동향	7
3. 정책방안의 마련	13
4. 관계기관, 시민사회와의 협의,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변경	23
III. 정책집행	25
1. 현재의 추진단계 (종결 혹은 유지)	25
2.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저항 및 애로사항	25
IV.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	26
1. 정책성과	26
2. 향후 과제	27

I. 정책의제 설정 단계

1. 정책의제 설정의 계기 · 상황 · 환경

□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”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개혁을 추진

○ 『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』은 기업 및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시장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

- 이를 통해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하에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

□ 이러한 『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』의 추진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및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함

○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그 시정이 외환위기 극복수단으로 강조

- 국민의 정부는 기업개혁의 원칙으로 「5+3원칙」*을 제시하고 이들 원칙을 중심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행태개선을 위해 노력

* 5대 원칙 : 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, ② 상호채무보증 금지,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, ④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 기업과의 협력강화, 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강화

* 3대원칙 : ①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, ②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 내부거래 차단, ③ 변칙 상속 및 증여방지

○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낮아지고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감소하며 부당내부거래가 억제되는 것 등의 성과를 거둠

* 부채비율 : ('98.4) 518.9% → ('03.4) 138.7%

* 채무보증 : ('98.4) 63.4조원 → ('02.4) 46.9조원

- 그러나,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상의 문제는 개선이 미흡하고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음
 - *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40%를 상회(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)
- 아직 불투명한 경영관행이 남아있고, 지배주주가 여전히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
 - * '024월 기준 민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.0%에 불과한 반면 41.6%에 달하는 계열사 지분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
 - * 더욱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'98년의 7.9%보다도 하락한 수준이었으며, 319개 계열사 중 64.9%인 207개사는 총수 지분이 전혀 없었음
-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 금융·보험사의 자금고화를 통한 지배력 확장도 여전
 - * 25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생보사의 53.9%, 손보사의 56.3%, 증권사의 51.8%에 해당하는 79개의 금융·보험사를 소유
-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는 기업 내·외부 견제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고 동반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 존재
 - * KDI 평가결과 '0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견제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38점(美, 화이자사는 97점),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은 45점에 불과
-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유지·강화를 공약으로 제시
- 참여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인식과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'03.2.21 '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'을 참여정부 12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모색
- 로드맵을 통해 시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개별기업, 기업집단, 거래시장 등 3개 차원에서 경영투명성, 소유지배구조, 공정 경쟁실태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2. Actor and Leader

- 이 로드맵의 마련은 공정위가 주관하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계부처, 교수, 변호사, 재계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T/F를 통해 논의
- 다만,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다른 제도들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분과로 구성

<T/F 구성위원 명단>

제1분과 : 기업집단시책 (10명)	제2분과 : 시장개선시책 (7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 (간사) ◦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◦ 최준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◦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◦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◦ 신종익 전경련 상무 ◦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◦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 ◦ 임영재 KDI 연구위원 ◦ 김주영 변호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병주 공정위 정책국장 (간사) ◦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◦ 최준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◦ 성소미 KDI 연구위원 ◦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◦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 ◦ 윤세리 변호사

* 국무조정실 권혁세 재경금융심의관이 1분과 옵저버로 참석

- 또한,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용역 수행
-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‘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’에 관한 연구용역수행('03.6~9월)
-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도 ‘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’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

II. 정책결정단계

1.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

□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」 마련을 위해 '03년 마련된 민관합동 T/F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

회의일 / 분과	안 건 (제 안 자)
1차(5.9) <합동>	◦ 시장개혁의 비전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및 작업방향(공정위)
2차(5.28) <2분과>	◦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 활성화 방안(공정위) ◦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(공정위)
3차(5.29) <1분과>	◦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(공정위) ◦ 소유지배구조 공개방안(공정위) ◦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공개확대관련(재경부) ◦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(이상승 교수) ◦ 지주회사제도 운영현황 및 주요 검토과제(공정위) ◦ 지주회사제도 : 주요 쟁점 및 시사점(전경련)
4차(6.19) <1분과>	◦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문제(공정위) ◦ 소유지배구조 공개방안 쟁점 검토(공정위) ◦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(이상승 교수) ◦ 지주회사 제도보완 방안 검토(공정위) ◦ 지주회사 관련제도 개선과제 조사결과(전경련) ◦ LG그룹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(김주영 변호사) ◦ 1998.8. 지주회사 허용시 예측내용과 실제결과(김주영 변호사)
5차(6.25) <2분과>	◦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(공정위) ◦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 활성화방안(공정위) ◦ 공정거래법 개선을 위한 제안(한국경제연구원)
6차(7.16) <1분과>	◦ 소유지배구조 공개방안(공정위) ◦ 대기업집단 출자동향 및 평가(공정위) ◦ '03년 출자내용과 시사점(전경련) ◦ 시장개혁정책과 경쟁정책에 관한 건의(이상승 교수)
7차(7.22) <2분과>	◦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(공정위) ◦ 공정거래법 사소제도 활성화방안(공정위) ◦ 공익소송제 도입 관련 검토(공정위)
8차(7.30) <1분과>	◦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방안(공정위) ◦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설비투자동향(산자부) ◦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·적용제외와 졸업제도 운영방향(전경련)
9차(9.19) <1, 2분과 합동>	◦ 한국개발연구원(KDI) 용역결과 ◦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(이상승 교수)
10차(9.29) <합동>	◦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(안) (공정위)

□ 이러한 T/F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에 대해 논의

○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

안 건	논 의 내 용
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규모회사(자산 2조원 이상)의 주식취득 사전신고 전환 ◦ 피취득회사의 자산/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◦ 결합 전후 모두 계열사인 회사의 자산/매출만 합산하도록 피취득회사 자산/매출액 산정방식 개선 ◦ 지배지분 취득시 재신고제 도입 ◦ 계열사간 임원겸임 신고면제 ◦ 사전심고에 대한 최장심사기간 연장(90일→120일) 및 30일 경과시 자동 신고수리 제도 도입 ◦ 효율성 증대효과 예외인정과 관련하여 동 효과가 경쟁제한성 치유를 곤란 하게 하지 않도록 요건 엄격화 및 부실사업부문 예외인정 명문화

○ 공정거래법상 私訴제도 활성화 방안

안 건	논 의 내 용
사소제도 활성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정조치확정 전에도 민법 및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토록 함 -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토록 함 ◦ 무과실 책임 조항 폐지 여부 ◦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할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의 손해액 입증 책임 경감 ◦ 손해배상청구소속시 법원 외에 당사자도 공정위에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◦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(3년)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(10년)로의 연장 여부 ◦ 부당내부거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제외 여부 ◦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여부

○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방안

안 건	논 의 내 용
지주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주회사의 기본요건(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) 조정방안 ◦ 자회사간 출자 금지 방안 ◦ 손자회사 허용범위 구체화 및 지분율 요건 신설 방안 ◦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인정 기간 및 범위 확대방안 ◦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수주주 권리보호방안 ◦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집단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

○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

안 건	논 의 내 용
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업 투자 저해 여부 ◦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(집단)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면제 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소유-지배 괴리 정도가 낮은 기업집단을 지정제외 ②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·손자회사 지정제외 ③ 계열회사수가 일정수(예:5개) 이하로서 3단계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지정제외 ④ 외국인지분 20%이상인 기업의 적용면제 방안 ⑤ 내부통제장치가 갖추어진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적용면제 방안 ⑥ 부채비율 100% 미만인 기업집단에 대한 면제제도 폐지 여부 ◦ 일정요건을 갖춘 출자를 제한대상 출자금액 합산시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적용제외·예외인정 정비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적용제외 폐지 -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예외인정 요건 강화(외국인 10% 이상 →최다 출자자) 및 동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부여 - 기한이 만료된 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연장 여부 - SOC 기업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대상 추가(BOO 방식) - 동종·밀접업종 출자 적용제외 대상 추가(통계법상 ‘특수분류’ 항목) - 신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시 신산업 매출액 비율 요건 유예기간 부여 - 회사정리절차 주식 예외인정 제한(2001.3.31 이전 취득) 폐지 ◦ 출자한도(순자산의 25%) 인상 여부

○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또는 상설화 방안

○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공개방안

○ 한국경제연구원(전경련 산하)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선방안

안 건	논 의 내 용
공정거래법 개선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 및 출조조절 조항 삭제 ◦ 공동의 거절거절,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,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의 원칙 적용 ◦ 담당부서 신설 등 공정위의 연구·조사 기능 확충 ◦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◦ 형사처벌 대상 축소

2.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찬반논의 및 언론보도 동향

□ 위와 같은 정책대안들 중

- 규제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재계는 찬성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반대
- 규제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재계는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찬성

□ ‘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’의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정부 직접 규제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관합동 TF를 통해 결정된 것임에도,

- 언론들은 대체로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보도
 - 2004.5.7일자 동아일보(A2면), 중앙일보(26면), 한국경제신문(A11면)은 각각 “공정거래법, 기업 더 옥죄건가”, “공정위가 나설 때가 아니다”, “경제불안 철저히 외면한 공정위” 등 공정위 정책이 기업을 옥죄한다는 내용을 사설을 게재
 - 2004.5.8일자 동아일보(1면)와 조선일보(1면)도 각각 “정부가 기업활동 위축시켜”, “정부가 기업활동 위축”의 제하에 재계가 기업활동위축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기사 게재
 - 2004.7.27일자 조선일보(A6면), 중앙일보(E2), 한국경제신문(A2면), 서울경제신문(4면)은 각각 “전경련 ‘대기업도 죽을 맛’”, “자산 5조원 넘으면 음썩달썩 못한다”, “자산총액 기준 기업 규제 위헌소지”, “‘출총제’는 위헌소지... 즉각 폐지될” 제하에,
 -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서 위헌소지도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억제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재

- 2004.11.30일자 동아일보(A4면)와 매일경제신문(A7면)은 각각 “기업의욕 꺾지 말길’ 전경련 호소”, “불황도 버거운데 기업 치명타” 제하에,
-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기사 게재

가.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

- 시장규율이 확립될 때까지 소수지배구조 왜곡시정 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,
 - 예외가 50% 이상이고,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기
- 소유-지배 괴리가 작은 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,
 -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에 대해 출자규제를 완화하여 지주회사로 가는 과정에는 동의하나,
 - 괴리가 낮은 기업의 출자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모든 회사들이 출자를 더하게 되어 괴리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으며,
 - 그 계산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법적 정의도 어려워 법상 규제기준으로 삼기는 힘들다는 반대의견도 제시
- 출자총액제한제도 면제방안(졸업제도)와 관련하여,
 -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·손자회사 전체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,

- 계열사수 기준 면제방안, 외국인 지분이 20%이상 기업에 대한 면제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조직왜곡, 탈법행위 소지 등으로 인해 반대의견도 제시되었음

나.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

- 지주회사 제도가 현재의 대기업집단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키게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,
 -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등 일정한 제한조건하의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의 투명성 등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체제보다 좀더 개선된 기업형태라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
- 따라서, 현행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짐
 -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억제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
 - 지주회사 전환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및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전환유형 확대(1년 → 2년, 주식교환·이전방식 포함)
 -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자회사간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함

다.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

- 찬성 입장
 -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의미가 있고,
 -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차원에서도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

□ 반대 입장

- 소유구조공개로 인한 시장감시기능 강화와 투자자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, 반기업정서 증대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
 - 법집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, 민간 연구자료로 충분하다는 등의 의견 제기

□ 정보공개에의 주체, 추진방법,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시

- 회계·공시제도와 연계하여 접근할 사안이므로 공정거래법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
- 총수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보호 권리의 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
- 사업자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계열사간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므로 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
- 친인척의 주식소유 현황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카테고리화하여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

라.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또는 상설화

□ 찬성 입장

- 그동안 운용성과를 분석할 때 동 권한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남용사례가 없었음
- 공정위와 유사한 조사기능을 가진 금감원, 국세청, 감사원 등은 이 권한을 상시보유하고 있으며, 영장발부도 필요없음
 - * 미국의 경우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보호대상이 안되며,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도 조사기능을 가진 정부기관은 모두 요구권을 보유
- 이 권한의 보유자체가 부당내부거래를 억지하고 조사협조 유도

□ 반대 입장

- 동 요구권 발동의 전제가 되는 부당내부거래조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, 투명성 제고 등의 이유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, 동 요구권을 연장할 필요가 없음
- 한시법 도입의 입법취지,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원칙,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동 권한의 연장은 부적절함

마.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

- 기업결합 신고시점의 조정(결합완료전신고 전환),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다소의 논란은 있었으나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
 -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(자산규모 2조원이상)의 주식 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
 - 다만, 기밀누설·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
 - ※ 모든 기업결합을 사전신고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
 -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
- 기타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
 - 소규모 기업결합 및 계열사간 임원겸임의 신고면제
 - 피취득 회사의 규모산정방식 합리화
- 추가 주식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의무 부과
 - 제3자의 주식매각, 감사 등 다른 요인으로 1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의견 제기
 - 이에 따라, 적극적 취득에 의하여 1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재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함

바. 사소제도 활성화 방안

-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私人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私訴(손해배상청구)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
-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,
 - 무과실 책임 문제는 기업부담을 우려한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고의·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
-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 도입문제는
 - 과실 추정제도 도입과 함께 추가적으로 손해액입증책임을 완화할 경우 원고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,
 - 법원의 엄격한 손해액 인정 경향과 공정거래사건의 손해액 입증의 특수성을 이유로 동 제도 도입에 공감대 형성
- 손해배상청구대상에 부당내부거래를 제외하자는 의견, 사적 금지 청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대의견도 제기됨
 - 사적금지 청구제도의 도입여부는 향후 손해배상소송의 활용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함

사.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

-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공익소송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나, 위원들간의 공감대는 이루어지지 못함
- 외국의 입법사례 및 절차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·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

□ 찬성 입장

- 불량 사기성 기업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제소될 것이며, 위법억지효과가 매우 큼
-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로 '제소의 체념'에 있는 소액다수 소비자들은 결국 국가가 그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 등

□ 반대 입장

- 국가가 私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
- 기업에 부담이 되고,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문제 등

□ 기타, 독일식 단체소송이나 소비자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

3. 정책방안의 마련

- 위와 같은 T/F 논의, 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, 경제 장관간담회, '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방지방안' ('03.12.12, 재경부) 등을 바탕으로 '03.12.31. 로드맵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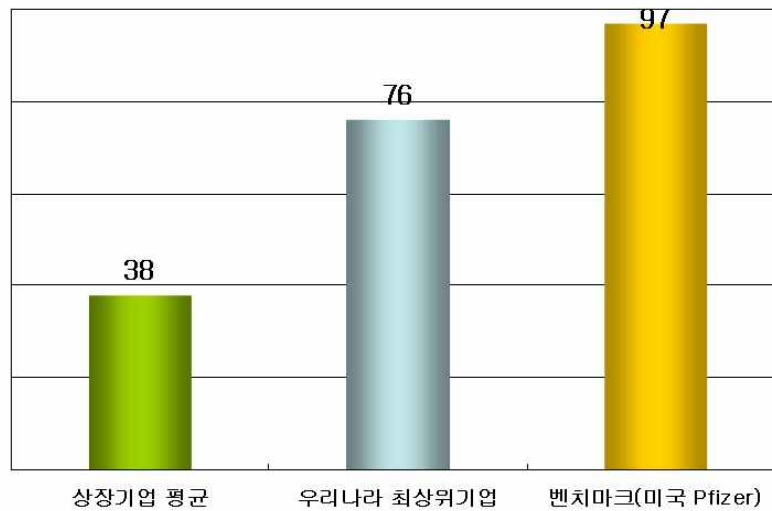
가. 기업·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

- '03년 KDI 용역을 통해 기업 내·부건제시스템 및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측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평가
 -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그간의 개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당한 개선 여지 존재
 - 기업 외부건제시스템 및 회계제도는 벤치마크(미국)에 근접
 - 그러나, 기업 내부건제시스템(제도 및 운영), 기업집단 소유·지배구조, 외부건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미흡

1) 기업 내부건제시스템

- KDI의 평가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은 38점, 최상위기업은 76점,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의 화이자사는 97점(이상 100점 만점)
 - * 증권거래소 및 기업지배구조 지원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KDI가 분석
 - 평가대상 : '01~'03년 상장회사 425~535개
 - 평가항목 : 주주 권리행사의 용이성, 이사회 경영건제 기능 사외이사의 비중·독립성 등 59개 항목
- 최상위기업은 상당한 수준이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흡
 - 주주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성 부족
 - * Pfizer의 경우 전화, 인터넷, 서면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이 다양
 - 사외이사의 비중과 독립성이 낮고 이사회 경영감시 기능 미흡
 - * Pfizer는 등기이사 15명 중 독립적 사외이사가 12명,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배구조위, 감사위, 보수위가 실질적으로 경영권 견제

< 기업 내부견제시스템 >



2) 기업 외부견제시스템

- KDI의 평가결과 제도도입수준은 80점, 집행수준은 45점, 미국의 제도수준은 89점(이상 100점 만점)

* KDI가 설계하고 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

- 평가항목 : 외부감사의 독립성, 공시의 적정성, 민사소송 등 사적견제와 감독기구의 실효성, 회계 투명성 등 제도 36개, 집행 20개 등 총 56개 항목

- 제도도입은 벤치마크와 비교·평가하고, 집행수준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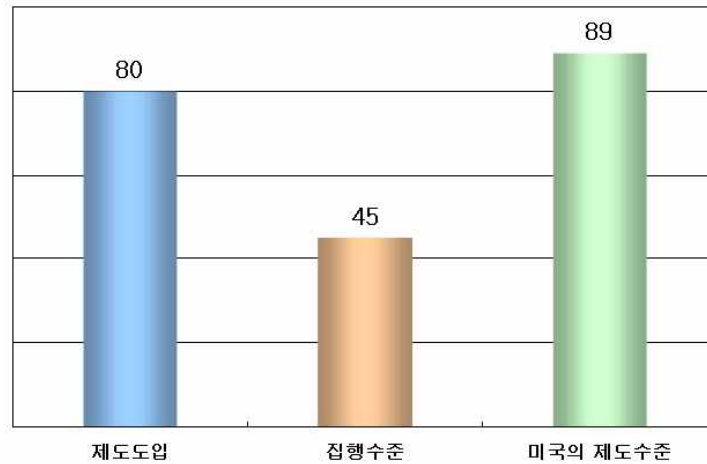
- 제도도입은 미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, 실제작동에 개선여지 존재

- '03년 제·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과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법이 시행되면 제도수준은 미국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

- 민사소송 등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

-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미흡

<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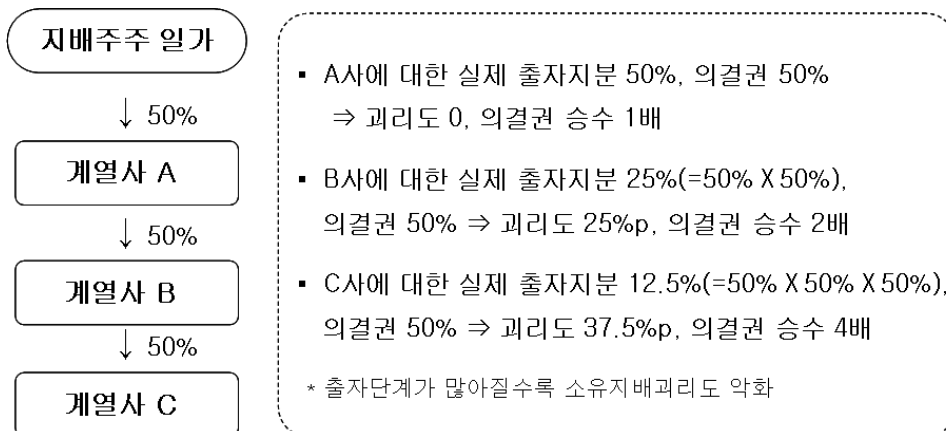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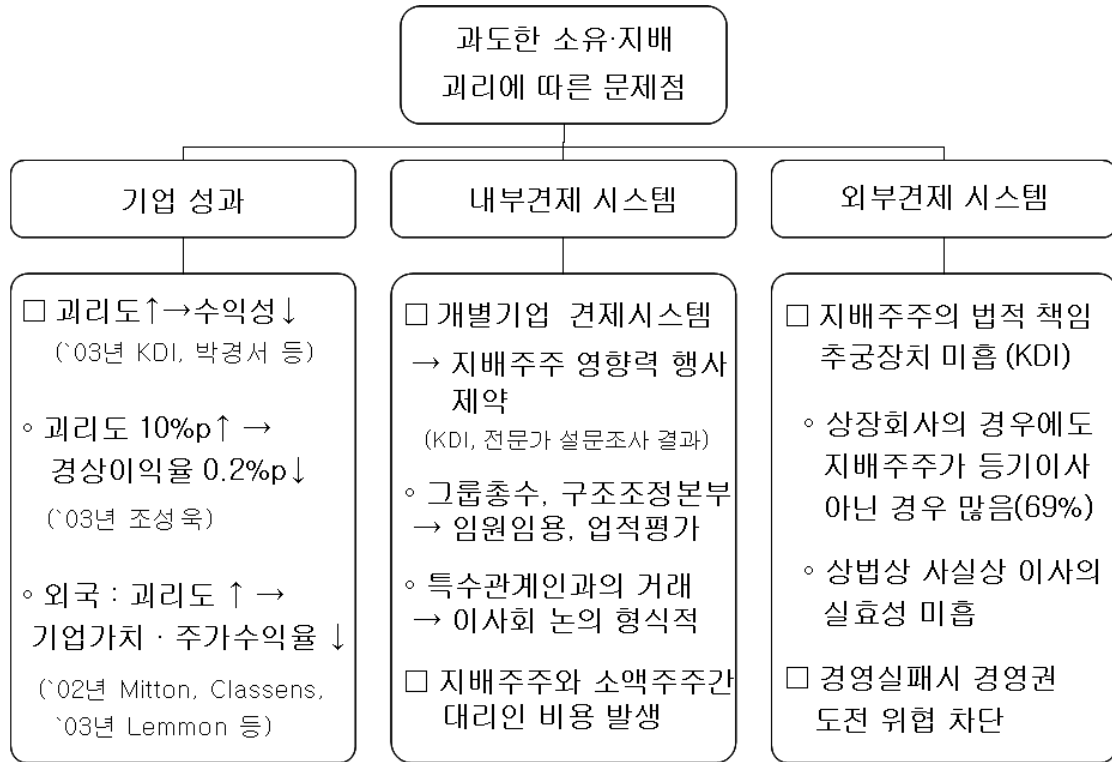
3)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

-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확장 → 실제출자지분과 의결권간의 괴리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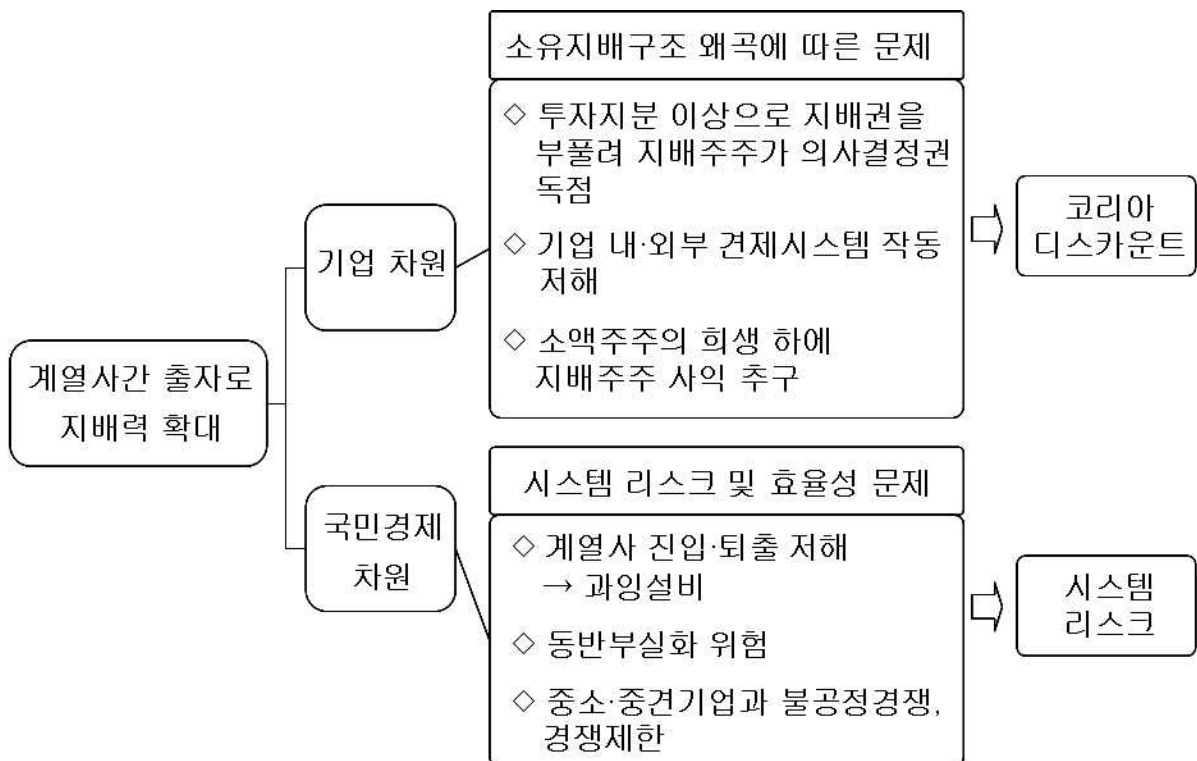
< 민간기업집단 소유·지배 괴리도 (단순평균) >

구분	실제출자지분(A)	의결권(B)	차이(B-A)	의결권승수
11개 민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	14%	41%	27%	6.1배
36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	25%	44%	19%	3.2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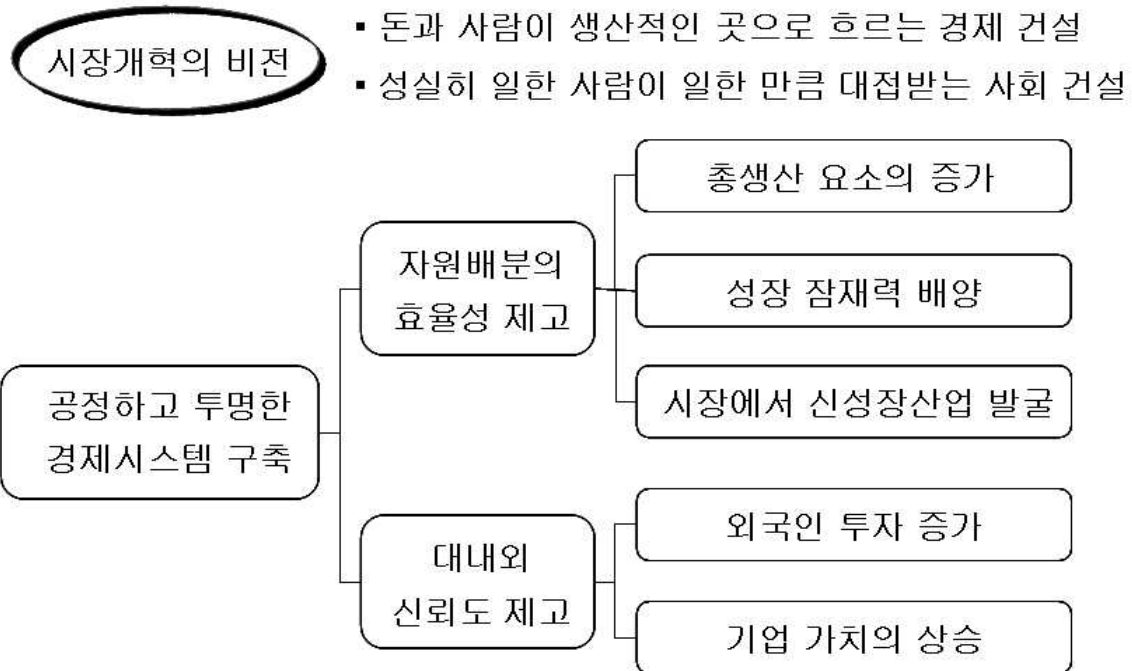


< 현행 기업집단의 문제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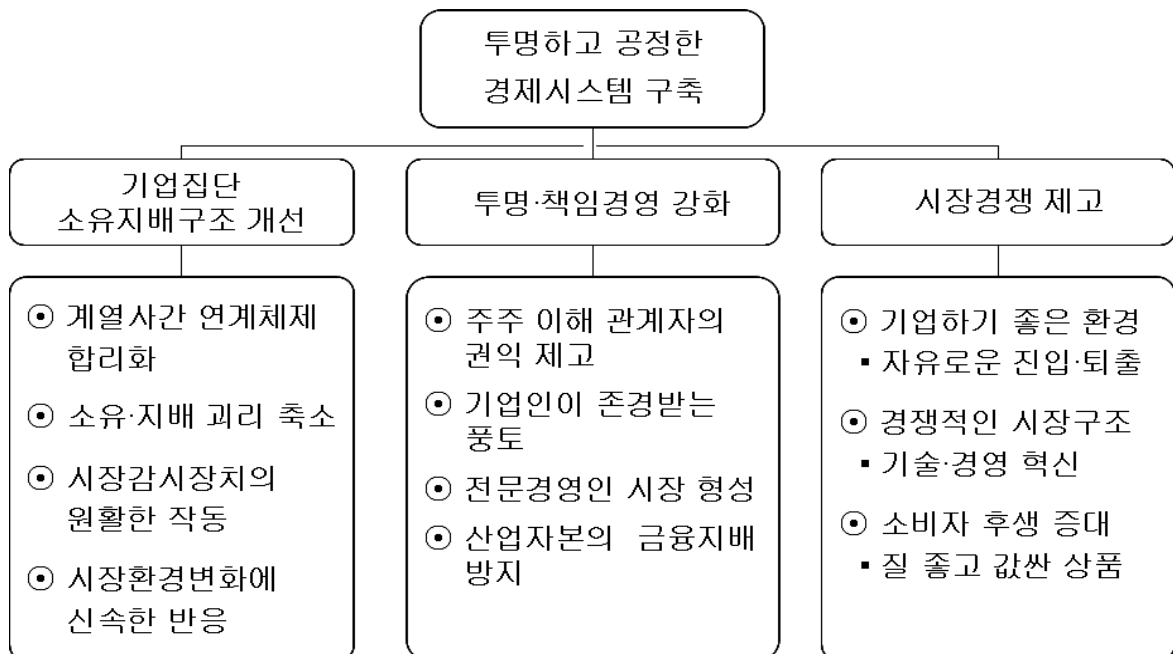


나.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

□ 위와 같은 평가 아래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 제시



< 시장개혁의 목표 >



다. 단계별 정책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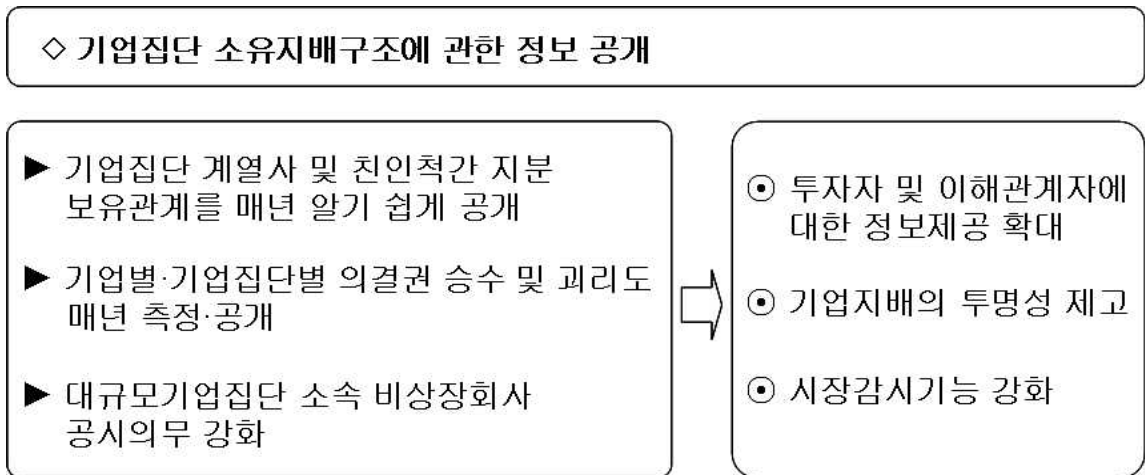
-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 제시

< 기본방향 >

- 정부직접규율보다 시장자율 감시 중시
- 내·외부 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여건조성
- 시장자율 감시기능의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정부직접규율 완화·축소

< 정책방안 >

1)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



* 친인척간 지분 :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범주화(예 : 직계존비속, 혈족 2~4촌 등)하여 공개

* 비상장회사 공시 :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, 계열금융사로부터 차입 등

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
: 소유지배과리 축소와 기업집단 체제의 발전 유도

- 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, 일부 보완
 - 현물출자, 물적분할, 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
 -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방안 검토
 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악용방지
- ▶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기준 마련
 -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
 -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·손자회사
 - 계열회사 수가 일정수(예 : 5개) 이하인 기업집단으로서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가 없는 경우
 - 소유·지배 과리도 및 의결권승수가 낮은 기업집단 (예 : 과리도 20%, 의결권 승수 2.0)
 -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한시적으로 운용
- ▶ 3년후 기업 내·외부 견제시스템 효과적 작동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 검토

- 기업 내·외부 감시시스템 작동 원활화
- 소유·지배 과리 축소로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예방
- 계열사별 독립경영성 강화

* 내부건제시스템의 예 :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 및 전원 사외 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 기업

◇ 선진국형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

- ▶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제고
 - 자회사간 출자금지
 -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 (비상장자회사 50%, 상장자회사 30%)
 - 자회사·손자회사 외의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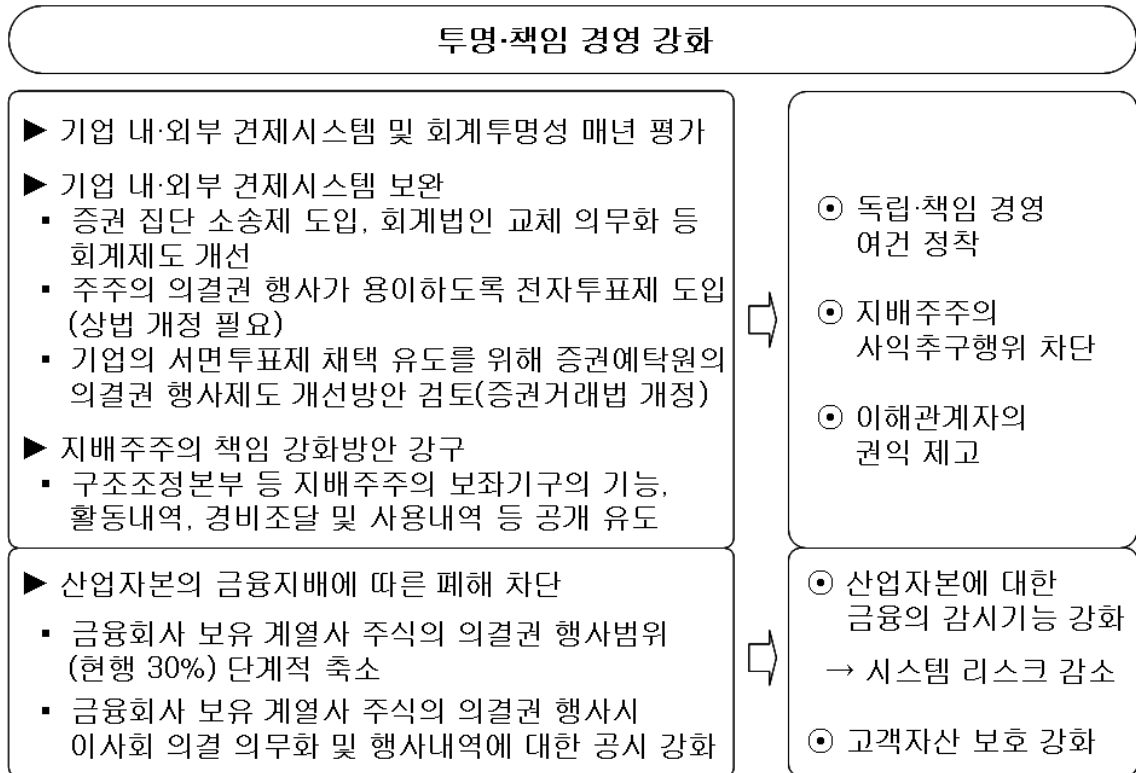
- 소유구조의 단순·투명화
- 지주회사·자회사 주주간 권리·의무 명확화

- ▶ 지주회사 설립·전환비용 축소
 -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 요건(100% 미만) 유예기간 연장
 - 모든 유형의 설립·전환시 지분율 요건 등 유예 인정
 - 비상장 합작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(50% → 3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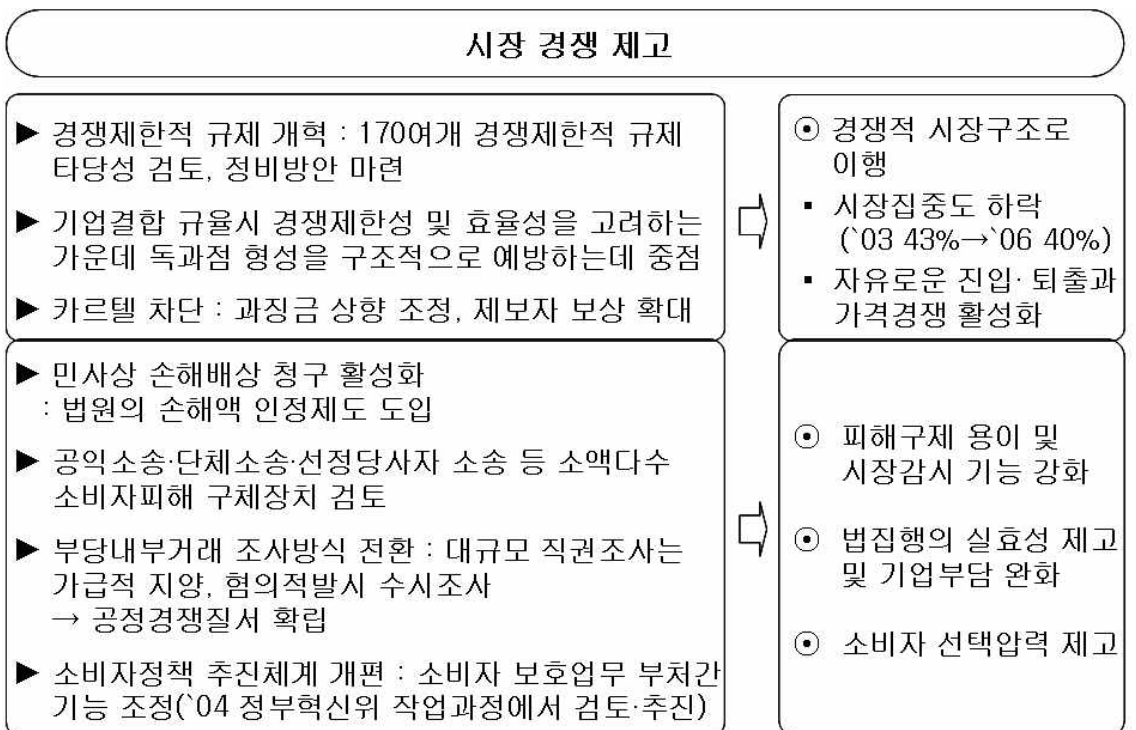
- 지주회사로의 전환 용이
-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진입·퇴출 장애요인 축소

※ GE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나 소유구조는 단순·투명
 - GE Co.는 상장회사로 주주가 약 400만명에 이르며 지배주주가 없음
 - 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를 100% 보유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소지가 없음
 -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

2) 투명·책임 경영 강화



3) 시장 경쟁 제고



< 추진일정 및 방향 >

□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

⇒ 3년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직접규율방식 전면 재검토

[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]

	2003	2004	2005	2006
◆ 소유지배 괴리도 □ 의결권 승수 (민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)	6.1			3.0
◆ 기업집단 체제				
▶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(지분보유관계, 소유지배괴리도 등)	매년 공개			
▶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강화		법개정		
▶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·예외인정항목 조정		법개정		
▶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졸업제 한시적 운영			시행령 개정	
▶ 소유지배괴리 낮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졸업		법개정		
▶ 지주회사 소속회사 출자총액제한제 졸업		법개정		
▶ 내부건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지배구조모범기업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면제		시행령 개정		
▶ 계열사 수가 적고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졸업		법개정		
▶ 지주회사 체제 투명성 제고(자회사간 출자금지 등)	법개정	시행령 개정		
▶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유도		연결납세제 도입 등		

[투명·책임 경영 강화]

	2003	2004	2005	2006
◆ 내부건제시스템 종합평가지수	38점			60점
▶ 집중·서면투표제 도입확대 유도		법 개정	인센티브 부여 통해 도입확대	
▶ 전자투표제 도입		상법 개정		
▶ 증권예탁원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		증권법 개정		
◆ 외부건제시스템 제도수준 평가지수	80점			90점
▶ 회계법인 교체의무화 등 회계제도 개선	외감법 국회 통과	제도 시행 및 보완		
▶ 증권집단소송제 도입	증권법 국회 통과	제도 시행 및 보완		
◆ 외부건제시스템 작동수준 평가지수	45점			60점
▶ 외부감사기능 활성화		개정 외감법 시행보완		
▶ 증권 집단소송 활성화		제도 시행 및 보완		
▶ 지배주주의 책임강화방안 강구		구조본 기능, 활동, 자금조달·사용 공개		
◆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피해 차단		금융사 계열사 주식 의결권 단계적 제한		

[시장경쟁 제고]

	2003	2004	2005	2006
◆ 산업집중도 (CR ₃)	43%			40%
▶ 경쟁제한적 M&A 심사 강화	법개정	심사강화 및 구조적 교정조치 적극 활용		
▶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	정비대상 규제확정	제2차 카르텔 일괄 정리법	규제 개혁 지속 추진	
▶ 카르텔 차단(과징금 상향, 제보자 보상 확대)	법개정	시행령 개정		
▶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	법개정	제도시행 및 보완		
▶ 공익소송, 단체소송, 선정당사자 소송 등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 검토		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 검토		
▶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	법개정			
▶ 부당내부거래 조사	대규모 직권조사 → 혐의시 수시조사			
▶ 소비자 정책 관련 부처간 기능 조정		소비자 보호법 개정		

4. 관계기관, 시민사회와의 협의,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변경

- 로드맵 마련시에는 이미 관계부처, 시민단체, 재계 등으로 구성된 T/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다시 로드맵에 대한 반대의견 제기
 - '03.8월 제1차 입법예고시 재계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 연장이 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남용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표명
 - 그러나, 규개위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및 이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국회 상정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
 - '04.4월 제2차 입법예고시에도 재계는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
 - 그러나,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구조의 폐해 억제를 위해 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역시 로드맵에서 제시한 안대로 국회에 상정
 - 국회 상정 이후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찬반양론 대립
 -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재벌체제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
 -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해서도 재계는 이 제도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한 반면,
 - 시민단체들은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그 연장을 주장
- 결국 로드맵에서 제시된 안이 큰 변동없이 국회 통과

<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가지 졸업기준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, ② 지주회사 소속 회사, ③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, ④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○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소유방식(BTO 방식) SOC투자법인 출자 적용제외 신설 - '03.3월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출자 예외인정 부활 - 기업구조조정,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, 신산업 관련 출자 예외인정시한(최장 8년) 폐지
지주회사 제도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·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(일반)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(금융) 회사 주식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 : 2년 - 부채비율(100%)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: 1년 → 2년 - 일부유형(현물출자, 회사의 분할분할합병,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)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- 비상장 합작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: 50%→30% ○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 : 자회사간 출자금지,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% 초과소유 원칙 금지 등
계열금융사의결권 행사한도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소속 금융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범위를 현행 30%에서 단계적으로 15%까지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6.4.1부터 25%, '07.4.1부터 20%, '08.4.1부터 15%
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재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4.2월 만료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되, 요구권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- 요구권 발동시 공정위 의결을 의무화 - 발동요건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등
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의무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

III. 정책집행

1. 현재의 추진단계 : 종결

- '06.11.15, 로드맵 추진결과를 토대로 대규모기업집단 개편방안을 마련하고, 공정거래법 개정('07.4.13. 공포)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로드맵의 27개 과제 중 공정위 소관 24개 과제 모두 이행 (세부내용 별첨)
- 다른 부처 소관 과제 3개(전자투표제 도입, 증권예탁원 의결권행사제도 개선, 연결납세제도 도입) 중 2개는 조만간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전자투표제 도입과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(안)에 반영('07.11.21 국회 법사위 상정)
 - 증권예탁원 의결권행사제도 개선은 상법개정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재경부가 증권거래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
 - 다만,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공청회('04.7월) 결과 세수감소, 조세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추진을 유보기로 함

2.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저항 및 애로사항

- 이 정책의 내용은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을 그 적용 대상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단 법령이 개정된 이상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크지 않음
- 다만,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방안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
 - 가령, 기업 내·외부견제시스템 개선이나 기업집단의 소유-지배 괴리 축소, 산업집중도 완화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이나 다른 공정거래법·제도의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곤란

IV.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

1. 정책성과

□ 로드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,

-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디지만 점차 개선
-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몇 개 그룹이 졸업하는 등 일부 성과
- 시장경쟁 차원에서는 경쟁질서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선되는 효과

⇒ 기업가치의 제고 및 국가 신용등급 상향, Korea Discount 해소 등 한국경제의 신뢰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

□ 그러나,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에 비해 그 개선정도가 아직 미흡

- 기업 내부건제시스템은 '03년 38점 → '06년 42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목표(60점)에는 미달
- 기업 외부건제시스템 제도수준은 '03년 80점 → '06년 92점으로 개선되어 목표치(90점)을 달성하였으나,
 - 그 작동수준은 '03년 45점 → '06년 41점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목표치(60점)에도 미달
-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도 '03년 6.1배 → '06년 5.4배로 다소 감소하였으나, 목표치(3.0배)에는 미달
- 산업집중도도 '03년 43% → '06년 42%로 다소 개선되었으나, 목표치(40%)에는 미달

□ 이는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시장에서의 이행정도가 부족하고, 기업과 시장이 새로운 제도들에 적응하고 이들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
< 기업 내·외부 견제시스템 중간 평가 결과 >

구 분	2003년	2006년	목표
내부견제시스템 종합지표	38	42	60
외부견제시스템	제도도입수준	80	90
	작동수준	45	41
의결권 승수	6.1배	5.4배	3.0배
산업집중도	43%	42%	40%

자료] 2003년은 모두 KDI, 2006년은 견제시스템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
지원센터, 의결권 승수는 KDI, 산업집중도는 시장경제연구원

2. 향후 과제

- 로드맵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·제도의 선진화가 필요
 -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
 -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2/3수준까지 증가 ('05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)
 - 성장패턴도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증대보다 기술혁신과 경제적 효율증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
 - * 잠재성장률 추이 (KDI 및 OECD) : (80년대) 7.8% → (90년대 전반) 6.6% → (90년대 후반) 6.0% → ('02) 5.3% → ('03~'12) 4.6~5.2%
 - * 주요 선진국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['90~'00, 재경부] : 미국 65.6%, 캐나다 62.9%, 노르웨이 67.9%, 핀란드 130.7%
 - 국내경쟁의 촉진은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양이며, 이런 시장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 선진화
 - 시장경제 선진화는 자유로운 경쟁과 그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비례

효과적 경쟁정책 → 건전한 경쟁 → 혁신(Innovation)
→ 생산성 증대 → 1인당 GDP 증대(생활수준 향상)

※ 호주의 경우 '95년 국가경쟁정책개혁법 제정·추진 이후 GDP가 2.5%p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

※ OECD 성장보고서 등 많은 성장연구에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

○ 이에 따라 선진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가 필요

- 시장경제의 근본규범인 공정거래법·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

* 경쟁법의 원조격인 미국 등 선진 경쟁당국도 경쟁법 현대화를 위해 활발히 노력

예) 미국 경쟁법현대화위원회 (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: '04.4월 설립), 일본 독금법 기본문제 간담회(내각부 '05.7월) 등

□ 이러한 인식 위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·시행

○ 카르텔, 시장지배력 남용,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을 차단

○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쟁질서 제약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·제도적 틀 마련

- 기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 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규제는 강화

□ 그러나, 이러한 방안이 시행('07.11.4)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

< 작성부서 :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(2110-4718) >

[첨부] 「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」 추진현황

구분	세부과제 및 추진 현황
완료 과제	<p>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(지분보유관계, 소유·지배 괴리도 등) ○ 비상장·비등록 법인 공시의무 강화 ○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, 예외인정 항목 조정 ○ 결합부채비율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지정제외 한시적 운영 ○ 소유·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지정제외 ○ 지주회사 그룹, 소속사 전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○ 계열회사수가 적고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집단 출자총액제한 지정제외 ○ 내부건제장치가 갖추어진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면제 ○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제고 (자회사간 출자 금지 등) <p>② 투명·책임 경영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중투표제·서면투표제 도입 확대 유도 ○ 회계법인 교체의무화 등 회계제도 개선 ○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○ 외부감사기능 활성화 (법개정 완료, 과제는 지속추진) ○ 증권 집단소송 활성화 (법개정 완료, 과제는 지속추진) ○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피해 차단 (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단계적 축소) ○ 구조본 기능 및 활동내용, 경비조달, 사용내역 공개 유도 <p>③ 시장경쟁 제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쟁제한적 M&A 심사 강화 (법개정 완료, 과제는 지속추진) ○ 카르텔 차단 (과징금 상향, 제보자 보상 확대) ○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 ○ 부당내부거래 조사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 ○ 부당내부거래조사 (조사방식 기 변경, 과제는 지속추진) ○ 공익소송·단체소송·선정당사자소송 등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장치 검토 ○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: 연내 마무리 ○ 소비자정책 관련 부처간 기능 조정
추진중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투표제 : 법무부에서 상법(회사편) 개정(안)에 반영 ○ 증권의탁원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방안 :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증권거래법 개정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(재경부) ○ 연결납세제도 : 당분간 도입 유보 결정 (재경부)